

## 2017년 해남읍 정기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2017. 3. 14. ~ 3. 17.(4일간)
- 감사대상기간: 2015. 3. 1. ~ 2017. 3월 현재
- 감사반: 감사팀장의 5명
- 지적사항: 22건
  - 처분종류: 22건(시정12, 주의10)
  - 재정상: 1,905,330원(회수1,267,630 / 추징382,700 / 기타 255,000)
  - 신분상: 5명(주의5)



해 남 군  
[감사담당관]

# 2017년 해남읍 정기종합감사 실시 결과

## I 감사실시 개요

### 1. 기본방침

- 가.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 및 취약업무 지속 감사
- 나. 지도와 교육을 병행한 감사로 행정의 올바른 방향 제시
- 다. 공사, 용역 및 인·허가 민원 불편사항 해소에 감사 중점
- 라. 부패성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및 적극행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면책 추진

### 2. 감사 중점사항

#### 가. 군정시책을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의 감사 실시

- 업무를 틀을 바로 잡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감사
-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방안 검토

#### 나.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 및 취약업무 지속 감사

- 공직자 기본자세 6대 과제 지속 점검하여 행정의 기본 체질 강화
- 행정재산, 민간위탁사무 등 취약업무 주기적 점검체계 확립
- 취약업무 지속 발굴, 행정의 자기 통제 시스템 확립
- 언론보도, 군의회 지적사항 등에 대해 위법·부당 여부 점검
- 계약 및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여부 중점 감사

#### 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감사대상을 일한 내용보다는 부작위 행위로 전환
- 적극적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과감히 면책

#### 라. 부패성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적용

- 감사결과 문제점, 위법사항 발견 시 책임소재 철저히 규명
- 공금횡령, 토착비리, 고의적 봐주기성 업무처리 반드시 문책
- 무사안일, 책임회피, 업무 및 고의 민원사항 처리 지연행위 상급자까지 연대 책임

### 3. 감사 총평

- 2016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1위, 2016년 읍면장 현장행정 추진실적 평가 1위, 2016년 재활용품 수집 실적 최우수, 2015년 산불예방대책 추진 우수, 불법지하수시설 미등록 양성화 자진신고 추진 2위 등 군정주요업무 및 역점시책 추진에서 모범을 보였으며, 감사에 대비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였고, 감사기간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려는 자세가 보임.
- 하지만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담당업무에 대한 연찬 부족과 답습행정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상황임.
- 해남군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중심지로서 업무량이 타면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여러 분야의 평가에서 상위권의 실적을 거양함.
- 감사준비과정에서 지적사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며, 감사기간 적극적인 설명과 감사관과의 대화를 통해 업무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려는 자세를 보임.
- 특정업무에서는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며, 잘못된 업무가 개선되지 못하는 등 업무추진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시정하여야 할 사항임.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어야 할 정보들이 각종 공문서 생산시 제한 조치되지 않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

## 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분야	건명	처분종류		재정상 조치(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12	10	1,905,330	1,267,630	382,700	255,000	
1	총무	사무인계인수서 미작성		○					
2	"	개인정보보호 소홀	○						
3	방역	방역사업 추진 업무 소홀		○					
4	시장	5일시장 업무추진 소홀	○						
5	지역	민간보조사업(경로당 개·보수) 추진 소홀		○					
6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및 마을상수도 관리 소홀		○					
7	건설	소하천 점·사용허가 업무 소홀		○					
8	"	건설공사 대금 지급 지연		○					
9	"	환경보전비 미 계상 및 정산업무 소홀	○			169,000			
10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미측정	○						
11	"	2016년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						
12	"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			1,056,000			
13	세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 입금조치 소홀		○					

연번	분야	건명	처분종류		재정상 조치(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14	세출	지역개발공채 매입 소홀	○					255,000	
15	“	세출예산 지출과목 적용 소홀		○					
16	지방세	지방세 부과요구 등 소홀	○				382,700		
17	복지	국민기초수급자 전입에 따른 상담업무 소홀		○					
18	민원	주민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						
19	민방위	민방위업무 추진 소홀	○						
20	농정	'15년 흑염소 축산급이기 사업비 정산 소홀	○			18,180			
21	산림	'15년 산림소득 지원사업 정산 소홀	○			24,450			
22	농정	'16년 마을 경관보전활동비 지원사업 정산 부적정		○					

## 2. 분야별 지적사항

### 가. 일반행정 분야

#### 1) 사무인계인수서 미작성

##### 가) 지적사항

- 「해남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업무의 인계)에 의하면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기록물,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해남읍에서는 2015. 7. 1.자 및 2015. 12. 4.자 해남군 인사발령 (명예퇴직, 육아휴직)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음.

##### 나) 조치의견

- 관련 규칙을 준수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시기 바람.

#### 2) 개인정보보호 소홀

##### 가) 지적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해남읍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27건을 생산하면서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고 대국민 공개로 설정하였으며 일반문서에 준하여 관리하였음.

##### 나) 조치의견

-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 3) 방역사업 추진업무 소홀

#### 가) 지적사항

- 공동방역단의 위탁방역 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위탁방역 실시확인서(별지2), 위탁방역 실시기록부(별지3), 방역약품 수불대장(별지4), 방역일지(별지5), 공동방역단 운영비 지급내역부(별지6), 공동방역단 위탁계약서 등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음에도,
- 해남읍에서는 위탁방역 실시 기록부(3호)와 위탁방역 실시 확인서(2호)간 약품 사용량이 상이하게 작성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 나) 조치의견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위탁방역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 4) 5일시장 업무추진 소홀

#### 가) 지적사항

-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24조에 의하면 “상인회의 각종 서류(회원명부, 정관, 임원의 성명·주소록, 관할 구역 배치도, 총회 회의록,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8조에 의하면 “보유중인 보증금을 납입자에게 반환 처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해남읍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상인회의 각종 서류를 상인회 회장 자택에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유중인 보증금 3,995,520원을 납입자 48명에게 반환하지 않았음.

#### 나) 조치의견

-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 5일시장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나. 공사 분야

### 1) 민간보조사업(경로당 개·보수) 추진 소홀

#### 가) 지적사항

-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숙원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민간자본보조) 추진 지침에 의하면 사업건의(현황사진, 사업계획서)→예산확보

및 사업확정→보조금 교부신청(사업계획서, 설계서[견적서])→설계서의 건축 면적, 구조 등에 따라 보조금액 확정→계약서 작성 등→사업완료(현황사진) →정산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 해남읍에서는 “○○○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2건을 추진하면서 사업량(규모) 등 세부내역 없이 견적서에 의해 정산 및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없는 등 경로당 개보수사업(민간자본보조)을 추진하는데 소홀하였음.

#### 나) 조치의견

- 경로당개보수사업(민간자본보조)추진 지침에 의하여 사업 추진 시 사업량 (규모), 설계서 등 구비서류 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2) 소규모 급수시설 및 마을상수도 관리 소홀

#### 가) 지적사항

- 「수도법」 제47조(마을상수도) 및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해남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4조(시설의 관리), 제7조(점검)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하고,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 운영, 관리상황을 작성 보관 하여야 하며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질검사 및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해남읍에서는 「해남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 분기(연 4회) 실시하여야 할 정기점검을 ( ‘15년 1/4분기와 ’ 16년 3/4 분기 각 1회씩 수시점검만 실시) 실시하지 않아 마을상수도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 등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나) 조치의견

-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남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관리 대장에 기록 관리하시기 바람.

### 3) 소하천 점·사용허가업무 소홀

#### 가) 지적사항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 등의 점용 등) 제1항에 의하면 “소하천 등에서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시설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였으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점용 등이 허가 절차)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해남읍에서는 2015~2016년도 해남읍 ○○리 ◇◇◇◇번지 등 2건의 소하천 점용허가를 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지 않는 등 소하천 점·사용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나) 조치의견

- 하천점·사용허가 시 관련법에 따라 허가 후 그 내용을 공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4) 건설공사 대금 지급 지연

#### 가) 지적사항

- 「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2015.6.2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6조(준공대가의 지급)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 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 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 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6년<sup>1)</sup>에는 대가 지급에 소요되는 지급 기한이 5일로 단축 조정 되었음에도,
- 해남읍에서는 2016년에는 「도시계획도로 관로 준설 용역」의 준공대가를

1)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 1. 29. 일부개정, 2016. 1. 20. 시행

지급하면서 적정 처리기간인 5일보다 7일이 많은 12일이 소요되는 등 건설공사의 준공대가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나) 조치의견

-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대가 지급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람.

### 5) 환경보전비 미 계상 및 정산업무 처리 소홀

#### 가) 지적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그 사용 용도는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환경계측비용, 환경관련 인건비용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 해남읍에서는 “○○ 농로 포장공사” 외 1건에 대해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 소하천 정비공사” 외 1건에 대한 건설공사의 준공과정에서는 환경보전비를 정산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청소용품을 구매하는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환경 보전비 정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승인처리 하고 준공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등 환경보전금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 나) 조치의견

- 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시고,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부적정하게 정산되어 지급된 169천원은 회수하시기 바람.

### 6)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미 측정

#### 가) 지적사항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4조 및 같은 지침

제162조에서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하고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 해남읍에서는 차선도색 후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나) 조치의견

- 차선도색 발주 시 국토교통부 또는 경찰청 차선도색 기준을 준수하고 재귀반사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7) 2016년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 가) 지적사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188호<sup>2)</sup>』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동시설물(야외 헬스기구)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고시된 제품이므로 직접생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 해남읍에서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주)○○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게 하는 등 관계법규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나) 조치의견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2016.5.16.) - 중소기업청장

- 물품구매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고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적합한 업체와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8)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 가)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 제7절(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 해남읍에서는 (주)○○건설(대표자 ◇◇◇) 및 ○○건설(대표자 ◇◇◇)과 각각 계약 체결한 「□□ 농로 포장공사」와 「□□ 농로 포장 공사」의 경우 레미콘 차량이 현장내로 진입하여 일부 구간만 소운반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주)○○건설에는 326천원(제경비 포함), ○○건설(주)에는 207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집행하였고,

(주)○○건설(대표자 ◇◇◇)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한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공사」는 메쉬웬스를 8경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5.5경간만을 설치하여 294천원(제경비 포함)의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불이행하였으며,

(주)○○건설(대표자 ◇◇◇)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한 「□□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레미콘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도록 계획되었으나 덤프 트럭 2.5톤으로 소운반 하여 타설함으로써 133천원(제경비 포함)의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금액 조정을 미 이행하였고,

○○건설(주)(대표자 ◇◇◇) 및 (유)○○○○○○○○(대표자 ◇◇◇)과 각각 계약 체결한 「□□ 도로측구 정비공사」와 「□□ 용배수로 정비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안내표지판 비용을 설계서에 계상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액 조정 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각각 48천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과다 집행하였음.

## 나) 조치의견

-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1,056천원은 회수하시고, 이후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시고,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마. 세출회계분야

### 1)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 입금조치 소홀

#### 가) 지적사항

-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 3. 신용카드 사용절차의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에 의하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해남읍에서는 2015. 8. 4.부터 2015. 11. 30.까지 총 18건 15,089,980원을 지출하면서 신용카드 결제일보다 짧게는 7일, 길게는 45일 늦게 카드결제계좌에 입금하는 등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연 입금한 사실이 있음.

## 나) 조치의견

-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지정된 결제일까지 이용대금을 결제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

### 2) 지역개발공채 매입 소홀

#### 가) 지적사항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면제)제1항 별표2 공채의 매입면제대상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계약 등에 의하면 마.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급량비 비목의 예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의 구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해남읍에서는 2015. 5. 14. 군민의 날 행사 모자 구입비 지급 등 4건 255천원의 공채를 매입하지 않았으며, 2015. 12. 2. 무더위 쉼터 폭염주의 예방안내 표찰 및 포스터 구입 등 3건 95천원의 불필요한 공채를 징구하는 등 지역개발공채 매입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나) 조치의견

- 지출증빙자료로 첨부되지 않은 지역개발공채 255천원을 징구하시고, 앞으로 1,000천원 이상의 물품구매, 수리, 제조 계약을 체결 시 지역개발공채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3) 세출예산 지출과목 적용 소홀

### 가)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일반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구분되어 있고,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물품 구입 시에는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경우에 집행하여야 하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공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시 축·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여야 하며,
-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 설정을 보면 ①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② 정수책정 대상물품 ③ 비정수 물품구입비(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 해남읍에서는 2016. 2. 16. 사무실 파티션 구입 300,000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7건 6,819,5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고, 2016. 2. 24. 청사 LPG 가스 구입 등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2건 88,24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나) 조치의견

- 세출예산 집행 시 적정한 예산과목에서 지출하시기 바람.

## 바. 세무분야

### 1) 지방세 부과요구 등 소홀

#### 가) 지적사항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 규정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고,

- 동법 제35조(신고납부 등) 제1항에 의하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해남읍에서는 □□길◇◇◇-◇ ○○○ 소유 신축 저온저장고(해남읍 □□리 ◇◇-◇)에 대한 취득세 189,080원 등 총 3건 382,700원(취득세 2건 373,430 / 등록면허세 1건 9,270)을 부과요구 또는 부과하지 않는 등 지방세 세원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나) 조치의견

- 부과 누락된 신축 저온저장고에 대한 취득세 2건 373,430원과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1건 9,270원을 부과 요구 또는 부과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방세 세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

### 라. 복지분야

#### 1) 국민기초수급자 전입에 따른 상담업무 소홀

##### 가) 지적사항

- 정기계획이외에 신규 복지대상자 선정, 전입, 가구원 추가 등 가구 변동 사항 발생 시는 지원사항 확인조사를 위해 14일 이내 방문하여 모니터 상담지를 활용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상담 결과 및 실적을 행복e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해남읍에서는 2015년 3월 ~ 2017년 2월까지 전입한 국민기초수급자 16 세대에 대해 14일 이내에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않는 등 상담관리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나) 조치의견

- 국민기초수급자 전입 시 14일 이내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상담 결과 및 실적을 행복e음에 등록 관리하시기 바랍.

## 2) 주민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 가) 지적사항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등)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주민등록사무 편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접수 시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단, 분실 등으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망신고서 회수란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개인별주민등록표예비란에 사유를 전산 입력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해남읍에서는 2015. 3. 1. ~ 2016. 12. 31.기간 동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313명이 사망하였으며, 47명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회수받아 처리하였으나 주민등록증 미회수 235명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나) 조치의견

- 사망자 중 주민등록증 미 회수자에 대하여 전산 처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 3) 민방위업무 추진 소홀

### 가) 지적사항

-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등),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민방위 물자, 시설 등),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제19조(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제26조(편성절차 등), 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 규정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은 물론 민방업무지침(2017년도 국민안전처) 규정에 의거 민방위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 해남읍에서는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를 알려야 하나 미 통보,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통·리민방위대는 통합편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미 조치, 민방위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관창고별로 장비현황판 부착 및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현황판 미작성한 사실이 있음.

## 나) 조치의견

- 민방위 장비 보관창고에 장비현황표를 작성하여 기록관리 하시고, 관련 법규에 맞게 업무 추진하시기 바람.

## 다. 농정분야

### 1) '15년 흑염소 축산급이기 사업비 정산 소홀

#### 가) 지적사항

- 2015년 흑염소 축산급이기 지원사업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제7조제1호 별표2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임에도,
- 해남읍에서는 2015년 흑염소 사료급이기 지원사업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보조금(18,180원)을 추가 집행하여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나) 조치의견

- 부가가치세 및 영세율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정산을 철저히 하시고, 보조금 18,180원을 회수하시기 바람.

### 2) '15년 산림소득 지원사업 정산 소홀

#### 가) 지적사항

- 2015년 산림소득 지원사업 추진 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제7조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는 별표 농업기계 및 기자재의 명칭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농업인에게는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하고, 납품업자에게는 세금을 납부될 수 있도록 정산하여야 함에도,
- 해남읍에서는 2015년 산림소득 지원사업 정산 시 관련법의 별표 목록에 따라 기자재 및 농업기계의 명칭 확인, 부가가치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하여 보조금(25,450원)을 추가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나) 조치의견

- 관련법 별표에 따른 기자재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부가가치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하시기 바라며, 24,45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3) '16년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지원사업 정산 부적정

### 가) 지적사항

- 2016년 마을 경관보전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라고 관련지침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 해남읍에서는 2016년 마을 경관보전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중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별도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정산한 사실이 있음.

### 나) 조치의견

- 정산 세부사업비 내역에 따라 증빙자료 징구를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